
종합감사결과

【 2017년 미암면】



영암군
(기획감사실)

미암면 종합감사 결과

I.

감사개요

1. 감사배경 및 목적

- 읍면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불합리한 부분 시정·개선토록 하여 군민 불편 해소
- 수입, 지출, 재정관리 전반에 대한 점검을 통해 방만하고 낭비적인 재정운영 관행을 개선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 및 예산절감 유도
- 복지대상 관리 및 자원배분 실태 점검으로 중복·누락·편중 지원을 방지하여 역차별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로 군민행복 실현

2. 감사대상 및 범위

- 감사대상 : 미 암 면
- 감사기간 : 2017. 2. 27 ~ 2017. 3. 3(4일간)
- 대상기간 : 2015. 3. 10 ~ 2017. 2. 26(2개년)
- 감사자 : 기획감사실장 외 6인

3. 감사중점사항

- 공사·구매 계약체결 및 대가 지급의 적정성
- 기획, 총무행정, 문화 관광 등 일반행정 추진사항
- 농정업무, 지역경제업무 및 산불예방 대책 추진사항
- 복지행정 추진실태 및 관리의 적정성
- 소규모사업 및 각종 공사 시공의 적정성 여부
- 생활민원 및 각종 민원처리 실태 확인
- 각종 세금 과세자료 누락여부 확인 등

4. 주요위반사항 요약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기획·민원 일반행정	당직근무 준수사항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당직근무 사항을 준수 상황근무·재택 당직 근무를 함에 있어 상황근무시 일과시간 종료후 1시간 동안 당직실에 대기근무하고, 재택 근무자는 다음날 08:00까지 출근하여 당직이상 유무를 보고하여 당직근무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함에도 준수사항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p>【당직근무규칙 제12조】</p>
	민방위대 자원관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6년도 민방위대 편성결과 제출 공문에 의거 민방위대를 편성한후 통·리 민방위 대장에게 민방위대 편성사실 등을 통지하지 않음 <p>【민방위기본법 제20조】</p>
	민원서류 반려 시 의신청 미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서를 반려 처분하면서 민원인에게 구제 절차를 명시하지 않고 통지한 사실이 있음 <p>【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p>
	사무인계·인수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소속기관의 장 및 담당팀장 이상의 직위에 있는자가 퇴직·휴직 또는 전보되는 경우 그 사무의 한계를 명확히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사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사무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이내에 후임자에게 인계하여야 함에도 전출, 보직 변경자 총무팀장 신관재외 7명이 사무인계인수를 하지 않는 사실이 있음 <p>【지방자치법 제106조, 동법시행령 제66조, 제70조】</p>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출분야	이장 위·해촉에 따른 기본수당지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장 변경시에 수당 등은 조례에 특별히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할계산 방식에 의하여 지급 하여야하나 2016. 8. 9 채지리 ○○마을 이장을 위해촉하면서 신규 위촉된 이장에 대한 기본수당을 일괄 지급하여 해촉된이장(김○○)에 대하여기본수당 200,000원 일괄지급 하여 해촉된 이장에 대하여 기본수당 51,610원을 과소지급하고 신규위촉된에 이장(김△△)에 대하여는 기본수당 51,610원을 과다 지급한 사실이 있음. <p>【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자치부 훈령)】</p>
	우편요금 납부지연에 따른 가산금 납부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편발송 및 반송료 4건을 납부함에 있어 납부기한내 납부하지 못하여 발생된 미납요금에 대한 가산금 9,080원에 대해서는 회계직원이 변상하여야 함에도 공공운영비에 포함 지급하여 지출업무를 소홀히한 사실이 있음. <p>【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p>
	가족관계등록사무 지원사업 보조인력 4대보험 미가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법에 의거 사업주는 그 사업에 고용된 주 15시간 이상 월60시간 이상 근로자에 대하여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사항을 고용노동부장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15년 3월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가족관계등록 보조인력으로 기간제3명을 채용하면서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신고를 하지 않아 기간제관리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p>【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국민연금법 제8조, 고용보험법 제15조, 산업재해보상법 제6조】</p>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출분야	신용카드 발급대장 작성 비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담당공무원이 교체되거나 직제의 개폐시 전·후임 공무원은 신용카드 사용내역과 매출전표를 상호 확인후 이를 수수하고 그 뜻을 기재한 서면에 기명날인하고 비밀번호를 변경하여야 함에도 2017. 3월 감사일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는 법인카드 2개, 유류구매카드 2개에 대해 신용카드 발급 대장을 작성·비치하지 않아 신용카드별 발급일자, 갱신내역 등의 정보를 알수 없도록 관리하는 등 신용카드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p>【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p>
	관외출장여비 집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국내여행자의 일비·숙박비 및 식비는 여비 규정에 의거 지급하고 또한 자가용 이용자의 경우 철도운임 또는 전남도지사가 인가한 시군별 시외버스요금 인가내역의 범위내에서 지급함에도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총2건 대하여 참석대상자 명단에 없는자에 대하여 출장복명서 등 입증서류 없이 지출하였으며, 총 9건에 대하여 교통비를 잘못 계상하여 실제 관외출장여비보다 136,900원 과다하게 지급한 사실이 있음 <p>【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p>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세무분야	주민세(법인균등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암군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기초 과세자료 조사에 철저를 기하지 않음으로 주민세(법인균등분) 2건 110,000원이 누락되어 과세대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재무과-20337(2015.8.17)호, 재무과-19788(2016.8.12)】
	취득세 (건축물) 납부 미확인 및 과세자료 누락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납세의무자가 과세물건을 취득하고 법정기한 내에 신고납부하지 아니하면, 취득세 과세 자료를 군에 제출하여 부과·징수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나, 이를 소홀히 하여 취득세 11건 6,246,350원이 누락 된 사실이 있음. 【지방세법 제20조】
	주민세(재산분) 과세자료 관리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암군사무분장 규정에 의거 읍면에서는 과세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세원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나, 미신고 납부한 3개 사업장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조사하지 않고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 하여 주민세(재산분) 3건 516,600원이 누락되어 과세대상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음. 【재무과-17483(2015.7.13.)호, 재무과-17115(2016.7.14.)】
사회복지 분야	기초생활보장급여 신청인에 대한 행정 정보공동이용망 구비 가능 서류요청 및 징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급권 신청자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 공(변경)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설명을 듣고 본인 동의 서명을 제출하여 관련서류를 징구하여야 함에도 기초생활보장급여와 장애 연금을 신청한 7가구에 대하여 행정정보공동 이용망으로 구비가 가능한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신청 가구별로 직접 발급받도록 하여 징구한 사실이 있음.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보건복지부)】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사회복지 분야	장애인 등록증 교부 및 회수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나 장애인 등록취소 또는 장애등급 변경 등으로 유효하지 않은 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는 반환 및 폐기하여야 함에도 미암면 춘동길 25-3 광종진 외 13명에 대하여 행정절차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반환통보서(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를 반환기일 2주전까지 송달하여 장애인등록증 반환 절차 및 폐기처분 조치를 하여야 하나, 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다가 보건복지부로부터 통보 후 처리한 사실이 있음. <p>【장애인복지법 제32조】</p>
농업분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접수하여 처리시에 신청농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당해 신청 토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어 건축물이나 묘지 등 타용도로 활용하고 있어 신청 농지를 농업경영에 이용이 불가능함에도 민원 접수2015-4940046-0000096(2015.4.6.)호 및 민원접수2016-4940046-0000179(2016.8.18.)호로 신청된 토지의 일부가 불법으로 형질변경되어 농지이외의 목적(묘지)으로 사용되고 있음에도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를 접수받아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있음. <p>【농지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9조 3항 4호(농림수산식품부예규제23호)】</p>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농업분야	농지취득자격증명서 발급검토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지취득자격증명서 신청서 접수처리시 발급 심사 요령에 농업계획서는 농업인 또는 농업인이 되고자 하는자와 농업인에 한하여 제출도록 하고 있으며 주말·체험 영농을 하고자 하는 농업인이 아닌 개인은 이에 한정되지 아니함에도 2015년 2건, 2016년 5건, 2017년 1건의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서 접수시 영농계획서를 첨부하여 처리한 사실이 있음. <p>【농지법 제8조, 시행령 제7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7조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 제7조 2항 1호(축산식품부령)】</p>
	마을공동급식 지원 사업 대상자 선정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2년부터 2016년까지의 마을공동급식 지원사업을 추진하면서 마을에 따라 7회 (○마을), 6회(△마을, □마을), 5회(●마을, ◆마을, ▲마을)등을 하였으나 ▽마을 등 18개마을은 1회도 지원을 하지 않았으며 1회 또는 2회의 지원에 그친 마을도 10개 마을이어서 편중 지원한 사실이 있으며 상반기에 선정된 마을은 하반기에 배제하고 다음해에 선정하는 등 모든 마을이 골고루 돌아가면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번갈아 가면서 지원을 하여야 하나 일부 마을만 연속 선정하여 처리하는 등 편중 지원한 사실이 있음. <p>【전라남도농업·농촌 및 농업인 육성에 관한 기본조례 제10조】</p>
건설도시 분야	건설공사 현장대리인 중복배치 사전승인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암 국도2호선 진입도로 포장공사와 3개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전승인 없이 현장에 배치되는 건설기술자 1인을 2개 현장 이상에 중복 배치하는 등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음. <p>【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제3항】</p>

분야별	제 목	주요위반사항
건설도시 분야	환경관리비 정산 소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암 신월마을 농로포장공사』를 추진함에 있어 환경관리비는 법적기준에 적합하게 반영하였으나 준공하면서 환경관리비 정산내역을 미 확인하고 준공처리 되었다. 따라서 발주부서에는 준공 전 보험금 정산과 계약금액을 조정하고 사업비를 집행 하여야 하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집행하여 총 금액 76천원의 사업비를 과다하게 집행 하였다. <p>【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3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2항】</p>
	건설폐기물처리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미암면에서는 미암 울리 배수로 정비 공사를 추진하면서 사업 지구내에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폐콘 및 아스콘) 24.0톤에 대하여 건설폐기물처리계획 신고 및 처리확인을 하지 않은 등 감독업무를 소홀히한 사실이 있음. <p>【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p>
	건설사업자 선정 부적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를 대통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는 서로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여 서로의 범주를 넘어서지 못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게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취지이다. 미암문수마을 사면 보호공사 외2건의 사업을 추진하면서 전문건설업의 범주에 속하는 사업을 종합건설업 면허소지 업체와 계약체결 하는등 계약업무를 소홀히한 사실이 있음. <p>【건설산업기본법 제8조】</p>